

7월부터 개선되는 디자인 제도

- 무심사 등록출원의 창작성 요건 강화 등 -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막기 위해 무심사 출원된 디자인 심사시에도 창작성 요소가 고려된다. 또한 유행성이 강해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화상디자인 등 2개 품목이 디자인 무심사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디자인 창작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로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무심사 출원된 디자인도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무심사 등록제도의 기본 취지인 조기권리 부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디자인인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자류처럼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 가능성이 높은 제조식품 및 기호품(A1)과 화상 디자인은 별도의 디자인 검색 과정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주는 무심사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다만 적용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 1월 1일 출원분부터 적용기로 했다.

출원 되었다가 포기 또는 거절된 디자인은 선(先)출원 지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기로 했다.

이 경우 포기 또는 거절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이 후에 다시 출원 뒀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협의 불성립에 의해 거절된 출원에 대해서는 협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디자인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선출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디자인 출원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출원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출원시부터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 디자인 청구시기를 확대하였다.

이밖에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대상을 확대하여 출원인이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심사관의 재택

근무를 위한 서류반출 근거 마련하여 디자인심사관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보호법 하위법령에서도 디자인 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을 간소화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디자인과 관련된 서식을 통폐합함으로써 현행 25개 서식을 22개 서식으로 12% 감축했다.

이번 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사항은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이 편의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김원중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출원인들이 어렵게 창작한 디자인이 쉽게 권리화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 디자인 제도개선 사항 요약]

구분	개선 내용	개선 사유	비고	
법 개정 개선 사항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창작성 심사제도 도입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디자인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 강화	2007년 7월 1일이 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분부터 적용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확대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출원하는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확대	비밀디자인 청구 시기 확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분부터 적용
	포기, 거절 확정 출원 등의 선출원 지위개정	* 포기 또는 거절 확정된 타인의 출원에 대해 선출원 지위 배제 * 협의의 불성립에 의해 거절된 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공보에 게재하고 선출원 지위 유지	디자인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후 그 출원을 포기하거나 거절확정되는 것부터 적용
	신구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정비	*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보정시에도 신구성상실의 예외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함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 확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하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분부터 적용
	기타 개선사항	*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대상 등을 확대 * 디자인심사시에도 재택심사를 위한 서류 반출 근거를 마련		
하위 법령 개정 개선 사항	무심사등록물품의 확대	* 제조식품 및 기호품(AI)과 화상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무심사 대상물품으로 새로이 추가	디자인권 보호강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분부터 적용
	제출도면의 간소화	*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정면도를 제외하고 권리범위와 관계없는 모든 도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출원인의 편의제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분부터 적용
	각종서식의 통폐합	* 25개서식에서 22개서식으로 12% 감축	절차간소화로 출원인의 편의 제고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2 : 용이창작의 예]

	용이창작의 예	실제출원 사례
널리알려진 형상 모양 등	삼각형, 사각형, 원형, 각종 기둥, 빨대 등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의 예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	
흔한 모양의 예	봉황무늬, 거북이등무늬, 바둑판무늬, 물방울무늬, 곤무늬 등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경치, 행사장면	새, 물고기, 김홍도의 풍속도, 남대문, 남산타워, 에펠탑, 백두산 천지 등	

[참고자료 3 :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

○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디자인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1998. 3. 1)

○ 무심사등록 대상 물품

- B1(의복), C1(침구, 마루갈래, 커튼 등), F3(사무용지 제품,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

○ 무심사등록 출원 현황

- 매년 전체 디자인출원의 약20% 정도 차지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계 (증가율)	25,155	34,589 (37.5)	35,678 (3.1)	38,522 (8.0)	39,952 (3.7)	39,346 (△1.5)	42,874 (9.0)	46,615 (8.7)	52,662 (13.0)
심사 (구성비)	20,728 (82.4)	27,227 (78.7)	28,616 (80.2)	30,900 (80.2)	30,969 (77.5)	31,684 (80.5)	34,689 (80.9)	37,898 (81.3)	42,120 (80.0)
무심사 (구성비)	4,427 (17.6)	7,362 (21.3)	7,062 (19.8)	7,622 (19.8)	8,983 (22.5)	7,662 (19.5)	8,190 (19.1)	8,717 (18.7)	10,542 (20.0)

○ 무심사대상 품목 확대

- 제조식품 및 기호품과 화상디자인을 무심사물품에 추가('08. 1. 시행)

[참고자료 4 : 화상디자인]

□ 화상디자인의 개념

- 물리적인 표시화면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하여 시각을 통해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
- 즉 특정한 물품에 부착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시되는 그 물품의 '모양'(pattern)
- 아이콘, 아이콘set, Website GUI, S/W GUI, Mobile GUI, 정보가전 GUI, 기타 그래픽 이미지 등

□ 화상디자인 보호제도 도입

-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 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독창적이고 특징 있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있음
- 2003년도부터 특허청에서 화상디자인이 표현된 특정 정보통신기기의 부분디자인으로 보호

□ 화상디자인 출원 현황

- '06년 총 디자인 출원건수 52,662건의 0.9%인 462건
개인 특이출원 1,947건 포함시 4.6%인 2,409건

